



COSMOS STANDARD

기준

버전 4.2

2025년 9월 1일

본 문서는 2025년 9월 1일 배포된 COSMOS-Standard의 번역본이며,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영문 버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소개	3
1.1 COSMOS-standard의 주요 목표	3
1.2 관련 문서	4
2. 규정	5
3. 범위	5
4. 정의	6
5. 일반 사항	9
5.1 예방 원칙	9
5.2 동물 실험	9
5.3 지속가능성	10
6. 원료의 유래 및 제조 공정	11
6.1 원료의 범주	11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15
7. 구성 규정	18
7.1 유기농 인증 제품	18
7.2 NATURAL 인증 제품	19
7.3 천연 함량 계산 방법	19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20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20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20
8. 보관, 제조 및 포장	21
8.1 보관	21
8.2 제조	21
8.3 포장	21
8.4 섬유	23
9. 환경 관리	24
9.1 환경 관리 계획	24
9.2 세척 및 위생	24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26
10.1 일반 규정	26
10.2 유기농 인증 제품	26
10.3 천연 인증 제품의 경우	27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원료.....	29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30
10.6 홍보 문구	30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30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시그니처, 이름, 용어의 사용	30
11. 인증 및 승인.....	31
11.1 인증.....	31
11.2 승인된 원료	31
11.3 인증 기관	31
12. 표준 이행	32
12.1 효력 발생	32
12.2 적용일.....	32
12.3 전환 조치	32
부록	33

1. 소개

본 표준은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의 일반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BDIH(독일), COSMEBIO & ECOCERT(프랑스), ICEA(이탈리아) 및 SOIL Association(영국)이 설립한 COSMOS-standard AISBL(벨기에에 본부를 둔 비영리 협회)이 개발한 유럽 및 국제 표준입니다.

1.1 COSMOS-standard의 주요 목표

현재 과잉 개발과 개발 실패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조화시키고, 지구의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화장품 분야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경제 활동에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산 방식과 소비 행위에 변화가 요구됩니다.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산업은 이러한 상황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인식하고 새로운 유기농, 천연 화장품의 유럽 및 국제 표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목표를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생산 공정과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유기농 및 천연 화장품 산업에서는 원료 생산에서 완제품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 예방 및 안전 원칙에 따라 단순 명료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적용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기농으로 생산된 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고 생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책임감을 갖고 천연 자원을 사용하며 환경을 존중합니다
- 깨끗하고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존중하는 가공 공정과 제조 방법을 사용합니다
- 녹색화학의 개념을 통합하고 발전시킵니다

마지막 규정은 COSMOS 표준의 중요한 측면이며 식품 분야와는 다른 화장품 제조의 특수성과 제약 조건을 고려할 때 COSMOS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화장품 산업은 녹색화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유기농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을 위한 인증 표준을 개발하고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인증 표준은 현 기술 수준을 고려해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동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규정이 표준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성분을 5개의 범주로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인간의 개입이 증가하는 순으로 나열):

1. 물 - 제품 개발에서 기본적인 필수 원료로 수질 보장은 필수 요구 사항입니다
2. 미네랄 원료- 필요한 원료지만 재생 불가능하므로 사용 및 가공 과정에 명확한 환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유기농 관련 유럽 및 기타 공인 표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녹색 화학' 표준에 따라 유기농 원료를 사용해 깨끗하고 승인된 생산 공정을 통해 제조되어야 합니다

5. 기타 원료- 현재 상황에서 본 표준의 목표와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COSMOS-standard의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과 인류의 복지에 주요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목적으로는 미래의 기술 발전이 유기농화장품과 천연화장품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지속가능한 개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1.2 관련 문서

1.2.1 관련 문서

문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SMOS-standard 기준
- COSMOS-standard 기술 가이드 (추가적인 해석과 설명 포함)
- COSMOS-standard 표시 가이드
- COSMOS-standard 관리 표준서 - 인증 및 인정 요구사항

해당 표준 문서 및 COSMOS-standard AISBL에서 발표한 추가적인 공개 정보는 www.cosmos-standard.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2.2 저작권

이 표준은 COSMOS-standard AISBL의 자산이며 서면 허가 없이 복사, 복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2.3 개정

유기농과 천연 화장품 산업은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과 이해 수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COSMOS 표준은 원료와 기술의 가용성을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고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 앞서 언급된 COSMOS의 목표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개정될 예정입니다.

1.2.4 공식 언어 및 동사 형태

COSMOS-standard 문서는 영국 영어로 원문 발행됩니다. 번역문은 정보 제공으로 마련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음 동사 형태는 이 표준에서 요구 사항, 권장 사항, 권한 또는 기능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 'can', 'could' 및 'might'는 가능성 또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 'may'는 허용을 나타냅니다
- 'shall' 및 'must'는 의무사항을 나타냅니다
- 'should'는 권장 사항을 나타냅니다

2. 규정

이 표준의 사용자는 개정된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과 신규 화학 물질에 관한 EU REACH 규정(EC No. 1907/2006), 화장품 클레임에 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EU No. 655/2013) 및/또는 기타 해당하는 화장품에 관한 지역 및 국가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기농 화장품 및 천연 화장품에 대한 본 표준의 규정은 많은 국가의 법제도에 부합하나 일부 국가에 존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률 조항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3. 범위

이 표준은 다음 범위에서 화장품에 사용되는 제품 및 원료에 적용됩니다:

- **범위 1:** 유기농 화장품 또는 천연 화장품 인증,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 인증, 베이스포뮬라, 벌크웨어
- **범위 2:** 범위 1에 따라 인증된 완제품, 원료, 베이스포뮬라 사용 가능한 비유기농 원료의 승인

이 표준은 유기농 또는 천연 화장품 및 원료 제조업자, 서비스제공업체 상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4. 정의

이 표준의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산물 원료**’ - 농업이나 양식을 통해 수확하거나 자연에서 채집한 식물 및 동물 또는 미생물 제품

‘**보조제**’ - 원료 제조 과정에서 반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로 화장품 원료로 간주되지 않음

‘**베이스포뮬라**’ - 샴푸 베이스, 비누 베이스 및 크림 베이스와 같은 화장품 제조를 위한 기초소재로 사용되는 원료 혼합물

‘**벌크웨어**’ - 조제가 완료된(더이상의 재료가 추가되지 않는) 중간제품이지만 아직 완제품으로 충전되지 않고 포장되지 않은 상태

‘**촉매**’ - 공정에서 소모되지 않고 반응 속도를 변경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물질

‘**화학적 가공**’ - 부록 II(허용되는 공정) 및 부록III(허용되지 않는 공정)에 수록된 화학적 공정을 이용하여 가공 또는 추출

‘**화장품 원료**’ - ((EC) No. 1223/2009 인용) -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화장품에 사용된 물질이나 혼합물 다음은 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사용한 원료에 함유된 불순물
- 기술적인 이유로 원료 혼합물에 사용되지만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는 물질

‘**화장품**’ - ((EC) No. 1223/2009 인용) - 청결, 향기, 외형 변화와 보호 및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유일한 목적으로 또는 주요 목적으로 사용하며, 인체의 외부(표피, 모발, 손톱, 입술, 외음부)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모든 물질

‘**색조 화장품**’ - 색상을 입혀 적용 부위의 외형을 수정하기 위한 화장품 (아이섀도우, 립글로스, BB 크림, 염모제 등)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 (지침 2001/18/EC 인용) <979>인간을 제외하고, 짝짓기나 자연적인 재조합(또는 둘 다)과 같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식이 아닌 인위적인 방식으로 유전 물질이 변형된 생물체 유전자 변형에 사용되는 기술은 부록 1A(지침 2001/18/EC 인용)을참조합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파생물**’ - GMO에 의해 또는 GMO로부터 생성되며, GMO가 물질의 원천 생물체이거나 물질의 필수적인 변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 직접 관여하는 모든 물질

‘**제조업자**’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제조하거나 설계 또는 제조된 화장품을 소유하고 해당 제품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표로 판매하는 자연인이나 법인

‘**제조**’ - 제품의 취득, 준비, 처리 및 라벨링을 위해 공장 또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

‘**미네랄**’ - 지질 작용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성된 물질로 화석 연료에서 기원한 물질은 제외

‘ 혼합물 ’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2개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나 용액

‘ 부분(성분) ’ - 분자의 특정 부분

‘ 나노 물질 ’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다면의 외형 또는 내부 구조를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용성 또는 생체 지속성 물질로 크기는 1~100나노미터 범위

‘ 천연 유래 ’ - 물,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와 그로부터 파생되어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및 그 일부) 석유 화학 원료 부분, 석유 화학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는 천연 유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비천연 원료(NNI) ’ - 화학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 포함. 보통 석유 화학 물질에서 유래하나 구조 전체나 상당 부분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구조와 같습니다.

‘ 유기농 ’ - 유럽연합 규정(EC) 2018/84, USDA-NOP, 브라질 유기농 기준No.10.831 2003 를 준수하고 인증받은 생산 시스템 또는 공인 인증기관이나 권위를 가진 기관에 의해 제정된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기농 기준 이 표준에서 유기농은 다른 언어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용어도 포함되며 동일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기농 표준으로 간주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https://eur-lex.europa.eu/eli/reg/2018/848/oj>) 또는 미국 유기농 규정(<https://www.ams.usda.gov/rules-regulations/organic>)으로 해당 표준 또는 정부의 공식 결정에 명시된 메커니즘을 따른 것
- IFOAM Family of Standards에서 승인된 국가 유기농 인증 또는 지역(다국가) 유기농 인증 (<https://www.ifoam.bio/our-work/how/standards-certification/organic-guarantee-system/ifoam-family-standards>)

‘ 유기농 성분 ’ - 규정(EC) No. 2018/848이나 그와 동등한 국가나 국제 표준 또는 이 표준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증 기관이나 당국이 인증한 유기농 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원료(또는 제품)의 일부

‘ 석유 화학 부분 ’ - 석유에서 유래한 분자의 부분

‘ 물리적 가공 ’ - 부록 I(허용되는 공정)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을 사용하여 가공 또는 추출

‘ 차 원료 ’ - 화장품 원료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및 미네랄 제품

‘ 1차 포장 ’ - 제형 자체와 직접 접촉하는 포장 1차 포장의 주요 목적은 제품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 원료 ’ -

- a) 제조 과정에서 원료로 사용되도록 화장품 제조 업체에게 제공되는 물질 및 혼합물.
- b) 미용 목적으로 다른 물질 또는 혼합물과 함께 사용하도록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물질 및 혼합물(사람 신체의 외부 부분(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음부) 또는 치아와 구강 점막과 직접 접촉하는 혼합물로 청결, 향기, 외형 변화와 보호 및 양호한 상태 유지 또는 체취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물질과 혼합물이 ‘ 화장품 ’ 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충족하는 경우

‘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피부, 모발, 점막에 도포한 후 제거하도록 의도된 제품 제모용 왁스와 사용 후 제거하는 마스크(필오프 마스크)는 린스 오프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왁스/마스크는 물리적으로 제거되며 물로 씻어내지 않습니다.

‘ 비누 ’ - 비누화 반응을 통해 얻은 제품(액상이나 고형)

‘ 2차 포장 ’ - 제품 자체와 접촉하지 않고 제품의 브랜딩 및 진열에 사용할 수 있는 포장

‘ 물질 ’ - (규정(EC) No. 1223/2009 인용) - 자연 상태 화학 원소와 화합물 또는 제조 공정에서 얻은 물질로 안정성 유지에 필요한 첨가제와 사용된 공정에서 파생된 불순물을 포함하되, 그러나 물질의 안정성과 구성에 변화 없이 분리할 수 있는 용제는 포함하지 않음

‘ 자외선 차단 제품 ’ - 자외선을 흡수, 분산, 반사하여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주된 목적으로 사람의 피부와 접촉하도록 의도된 화장품

‘ 완제품 ’ - 모든 원료(물, 미네랄 원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및 기타 원료)를 포함하는 최종 화장품

‘ 야생 식물 ’ - 자연 지역, 숲, 농업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식물

5. 일반 사항

5.1 예방 원칙

원료, 기술 또는 공정이 건강이나 환경에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경우 예방 원칙에 따라 해당 원료나 기술, 공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1.1 나노 물질

환경적 관점에서 기능적 대안이 없고 화장품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유럽 화장품 규정에 정의된 나노물질은 다음에 대해 허용됩니다:

- 자외선 차단 제품에 UV 필터로 사용되는 이산화티타늄 및 산화아연
- 실리카

유럽 화장품 규정에 정의된 대로, 1~100nm 범위에서 입자 크기 분포(입자 수)가 50% 이상인 기타 모든 나노 물은 금지됩니다. 정량분석법에 기반을 한, 입자수에 따른 입도분포가 요구됩니다.

5.1.2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GMO 또는 GMO 유래 1차 원료나 성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1차 원료나 성분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 오염 수준은 0.9% 이하여야 하며, 우발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검출 한계 0.1%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5.1.3 방사선

이온화 방사선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2 동물 실험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요청을 받은 제삼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화장품을 실험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자의 요청을 받은 제삼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화장품 원료를 실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화장품법 외에 다른 법에서 요구되는 경우 예외로 합니다.

5.3 지속가능성

생물 다양성 보존과 지속가능성은 인증 제품과 성분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입니다.

5.3.1 팜유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사용되는 팜유와 팜핵유 및 그 파생 제품은 인증된 유기농 또는 인증된 지속가능 인증 팜유여야 합니다.

적용 규격 및 성분은 제7.4장을 참조합니다.

COSMOS는 COSMOS 공급 사슬 전반에서 팜유 원료 공급이 우림을 포함한 자연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6. 원료의 유래 및 제조 공정

이 표준에서 화장품 원료는 다음과 같은 다섯 범주로 분류됩니다. 또한, 각각은 다음 요건의 대상입니다:

- 물
- 미네랄과 미네랄 유래 원료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CPAI)
- 기타 원료

단일 성분 원료나 화장품 원료 혼합물의 유래와 구성에도 같은 분류 방법이 적용됩니다. 원료 제조 업체는 기술 문서에 해당 비율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리 및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만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 또는 유기농 원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의 유기농 함량에 관한 자세한 요구 사항과 계산법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1 원료의 범주

6.1.1 물

사용하는 물은 반드시 위생 표준(100CFU/ml 이하)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음용수
- 샘물
- 삼투압 정제수
- 증류수
- 해수

물은 부록 I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1.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은 의도적인 화학적 변형이 가해지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능하다면 환경 친화적인 추출 공정을 사용합니다. COSMOS 인증 제품 및 COSMOS 승인 원료를 다루는 모든 회사는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소싱을 보장하며, 가능한 경우 독립적인 인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Global MICA 표준 등).

미네랄은 부록 I에 수록된 물리적 공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유래 원료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록 IV에 수록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물성 성분은 다음 녹색 화학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원자 경제성:
 - 반응 질량 효율(마지막 반응 단계): $\geq 50\%$
 - 반응 질량 효율 = (의도하는 제품의 중량 / 모든 반응물의 중량) x 100
- 제조 중 에너지 소비 검토/절감
- 제조 중 폐기물 최소화
-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

제조 업체는 규정 준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6.1.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

물리적으로 가공한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원료를 포함하며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부록 1에 수록된 공정을 사용하여 추출한 식물, 동물 또는 미생물 유래 1차 원료여야 합니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1차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식물 물질 및 미생물
- 살아 있거나 도축된 동물에서 추출된 1차 원료
- IUCN 적색 목록(<https://www.iucnredlist.org/search>)에 나열된 멸종위기종에 의해 수확/채집된 1차 원료. IUCN (<https://www.iucn.org/resources/conservation-tool/iucn-red-list-threatened-species>)에서 정의한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종에는 위급(CR), 멸종 위기(EN) 및 취약(VU) 종이 포함됩니다

동물 유래 원료는 해당 원료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에 의해 생산되지만 동물의 일부가 아닌 물질
- 원료 획득 과정이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여서는 안 됨
- 부록 I에 수록된 공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6.1.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CPAI)

화학적으로 가공된 모든 식물, 동물, 미생물 유래 원료는 아래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1차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전적으로 변형된 식물, 식물 물질 및 미생물
- 살아 있거나 도축된 동물에서 추출된 1차 원료

동물 유래 원료는 해당 원료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동물에 의해 생산되지만 동물의 일부가 아닌 물질
- 원료 획득 과정이 동물의 죽음을 수반하여서는 안 됨
- 부록 I과 II에 수록된 공정에 따라 생산되어야 함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미네랄 부분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알코올과 다른 발효 부산물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입니다.

다음은 요구 사항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를 생산하는 모든 제조 업체에 적용되며, 제조업자는 녹색 화학 원칙에 따라 각 원료를 생산하는 일련의 모든 반응 단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국환경보호국 녹색 화학 프로그램, USA, 1998, www.epa.gov/greenchemistry).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제조 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부록 II에 수록된 화학 공정과(허용되는 않는 화학 공정은 부록 III 참조) 재생 가능한 자원만 사용해야 합니다
- 배양이나 발효를 통해 얻은 원료 및 GMO 생명공학 기술이 사용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배양에 사용되는 영양분은 천연 식물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나 그로부터 파생된 물질이 아닌 미생물 원료여야 합니다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다음 정량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4페이지 표 확인)

원칙	요구 사항
원자 경제성	반응 질량 효율 (마지막 반응 단계): $\geq 50\%$ 반응 질량 효율 = (의도하는 제품의 중량 / 모든 반응물의 중량) x 100
비지속성, 생물학적 비축적성, 무독성 제품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물질 및 제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생독성(LC50, EC50, IC50) > 1mg/l 및 생분해성 > 95% 수생독성(LC50, EC50, IC50) > 10mg/l 및 생분해성 > 70%(또는 아래 요구 사항에 따라 60%) 수생독성: COSMOS 인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LC50/EC50 값을 결정하기 위해 어류나 물벼룩을 이용한 시험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5.2 참조). 대신, 간접적인 대체 시험법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하거나 생체 외 시험법을 이용합니다. 허용되는 생분해성 시험법: - OECD 301A(ISO 7827) 또는 OECD 301E, 분해율 > 70% - OECD 301B(ISO 9439), OECD 301C, OECD 301D(ISO 10707), OECD 301F(ISO 9408) 또는 OECD 310(ISO 14593), 분해율 > 60%

참고 - 원자 경제성과 비지속성 요구 사항이 면제되는 주요 특정 범주의 원료는 부록 VIII을 참조합니다.

현 녹색 화학 발전 단계에서는 아직 모든 원칙의 한계나 요구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다음 녹색 화학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제조 중 에너지 소비 검토/절감
- 제조 중 폐기물 최소화
-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

제조 업체는 규정 준수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녹색 화학의 원칙 및 실행 방법의 발전에 따라 더욱 정교한 원칙과 실행 방안을 이 표준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6.1.5 기타 원료

일부 기타 원료는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의 효능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효과적인 천연 대체제가 없을 경우 사용이 허용됩니다. 부록 V에 수록된 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유기농 함량 계산 방법

아래 계산 방법은 화장품 원료의 유기농 성분의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 원료와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가 제4장 '정의'의 유기농 생산 시스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 표준에 부합하는 유기농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본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료가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한 유기농 함량의 최소 비율은 없습니다.

모든 원료는 이 표준에 따라 계산된 실제 유기농 함량을 기술적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6.2.1 물

물은 유기농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 직접 첨가된 물 또는
- 다른 원료의 혼합물 또는 원료로 간접적으로 첨가되는 경우 (예: 미네랄,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와 함께 첨가되는 물)

신선한 식물의 액상 내용물(즙)은 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추출물이나 건조 또는 농축 원료의 복원은 6.2.3를 참고합니다.

6.2.2 미네랄 및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과 미네랄 유래 원료는 유기농 함량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6.2.3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

a)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의 경우, 오직 1차 유기농 원료만 사용하거나 1차 유기농 원료와 유기농 용매만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 유기농 함량은 100%입니다.

b) 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단계

$$\text{비율} = [\text{신선한 유기농 원물} / (\text{추출물} - \text{용매})]$$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1로 계산합니다

2단계

$$\text{유기농 함량(\%)} = \{[\text{비율} \times (\text{추출물} - \text{용매}) / \text{추출물}] + [\text{유기농 용매} / \text{추출물}]\} \times 100$$

조건:

- 용매는 최종 추출물에 잔류하는 용매의 양을 말합니다
- 물은 용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같은 식물의 유기농과 비유기농 혼합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물만 사용하여 추출하는 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유기농 함량(%) = (신선한 유기농 원물 / 추출물) × 100

c) 비수용성 추출물의 경우, 유기농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유기농 함량(\%)} = (\text{유기농 식물*} + \text{사용하는 유기농 용매}) / (\text{식물*} + \text{총 사용 용매}) \times 100$$

*신선 또는 건조 식물 원료

조건:

- 용매는 최종 추출물에 잔류하는 용매의 양을 말합니다
- 물은 용매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같은 식물의 유기농과 비유기농 혼합물은 유기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 조건(위 a, b, c에 해당):

- 알코올을 추출 용매로 사용할 경우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원료가 비유기농 알코올로 추출된 경우, 이 원료는 유기농 함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를 물이나 비유기농 용매 또는 운반체로 희석하거나 가공 후에 다른 첨가물과 혼합할 경우 유기농 함량은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추출물의 유기농 함량 계산 시 건조 식물과 동등한 신선한 원물의 중량은 아래 식으로 계산합니다:

- 또는 건조물과 원물의 실제 비율을 사용합니다(근거 자료 필요)
- 또는 다음 비율을 사용합니다

나무, 껍질, 씨앗, 견과류, 뿌리	1 : 2.5
잎, 꽃, 지상부	1 : 4.5
과일(사과, 포도, 스위트체리 등)	1 : 5
수분이 많은 과일(살구, 오렌지, 파인애플, 자몽, 딸기, 아세롤라, 사워체리 등)	1 : 8

목록에 없는 과일의 경우 이 데이터베이스(<https://fdc.nal.usda.gov/index.html>)를 확인하고 86% 임계값을 사용하여 해당 식물이 과일인지 수분이 많은 과일인지 정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순수 농축액과 건조 분말은 자연 상태로 환원할 수 있습니다:

- 제형에 첨가되기 전 복원합니다
- 농축액이나 분말은 첨가제나 운반체 등 다른 원료를 포함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 운반체와 혼합된 말토덱스트린은 환원될 수 없습니다)

참고- 동결 건조는 품질을 가장 잘 보존합니다.

만약 신선 원물이 유기농이 아니며 추출물 내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비율(%)을 계산하려는 경우, 위 b)나 c)에서 유기농 원물을 비유기농 원물로 대체합니다.

6.2.4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CPAI)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에서 원료의 유기농 함량은 해당 1차 유기농 원료의 비율(중량)로 계산하며, 원료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모든 1차 원료를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CPAI 유기농 함량(%) = [(사용된 모든 유기농 1차 원료 - 과량 유기농 1차 원료) / (사용된 모든 1차 원료 - 과량 1차 원료)] x 100

조건:

- 비반응성 용매는 1차 원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과량은 반응 후에 재활용되거나 제거되는 1차 원료의 양을 뜻합니다
-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를 물, 비유기농 용매 또는 운반체로 희석할 경우, 유기농 함량은 그에 따라 비례하여 감소합니다
- 100% 유기농 1차 원료의 분열로 얻어지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100% 유기농입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 유기농 성분의 최소 함량이 적용되지 않으며
- 위 방법으로 계산된 유기농 함량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7. 구성 규정

이 표준에서는 완제품과 원료를 각각 두 수준으로 구분합니다:

- 유기농 인증 화장품
- 천연 인증 화장품
- COSMOS CERTIFIED 원료(유기농)
- COSMOS APPROVED 원료(비유기농 성분)

화장품에서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PPAI)의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PPAI 제품(%) = 개별 PPAI 원료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유기농 PPAI 제품(%) = 개별 유기농 PPAI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유기농 제품(%) = [개별 유기농 PPAI 중량의 합 + 개별 유기농 CPAI 중량의 합] / 모든 원료의 총 중량 x 100

7.1 유기농 인증 제품

7.1.1 원료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잔여 농산물 원료가 부록 VI에 수록된 경우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부록 VII에 수록된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95% 이상의 유기농 PPAI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알코올 분무 향수, 오 드 뚜왈렛, 코롱 워터와 같은 비누 및 알코올 기반 제품의 구성으로 인해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알코올이 주성분인 경우(구성의 50% 이상이 알코올), 최소 [PPAI + 알코올]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text{유기농 PPAI} + \text{유기농 알코올}] / [\text{모든 PPAI} + \text{알코올}] > 95\%$
- 비누:
 - 원료로 비누 완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식물성 기름 사용), 같은 표준이 적용됩니다. $\text{유기농 PPAI} / \text{모든 PPAI} > 95\%$
 - 솥 누들을 사용하고 다른 원료가 첨가되는 경우 다음 계산을 따릅니다. $[\text{PPAI} + \text{CPAI 비누}]$ 의 95%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text{유기농 PPAI} + \text{유기농 CPAI 비누}] / (\text{모든 PPAI} + \text{CPAI 비누}) > 95\%$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유기농 CPAI 비누 =

$$[(\text{유기농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과량 유기농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times 100$$

CPAI 비누 =

$$[(\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비누화 농산물 원료} - \text{모든 과량 비누화 농산물 원료})] \times 100$$

비누화에 사용되지 않는 모든 첨가제(구연산 등)는 이 식에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잔여 농산물 원료가 부록 VI에 수록된 경우 반드시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7.1.2 완제품

- 완제품의 최소 2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으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비유화 수용성 제품, 미네랄 또는 미네랄 유래 원료가 80% 이상인 제품은 완제품의 10% 이상이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벌크웨어 완제품 계산과 동일한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7.2 NATURAL 인증 제품

최소 유기농 함량 표준은 없습니다(그러나, 10.3의 요구 사항을 참조하여 제품 표시에 유기농 원료를 기재할 수 있음).

베이스포물라의 경우(샴푸 베이스, 비누 베이스 등 유기농 함량이 없는 기본 원료제형 베이스) 일반적인 승인 과정 품목이 아닙니다. 대신 유기농 함량 요구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COSMOS CERTIFIED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현장 심사 포함).

벌크웨어 품은 완제품 계산과 동일한 계산 규칙이 적용됩니다.

7.3 천연 함량 계산 방법

화장품에서 천연 함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text{총 천연 함량(\%)} = [\text{완제품 중량} - \text{비천연 원료(NNI)의 중량(부록 V.1)} - \text{석유 화학 부분(부록 V.3) 중량}] / \text{모든 원료의 중량} \times 100$$

7.4 팜유와 팜핵유 및 파생 제품

화장품 및 화장품 성분에 사용되는 팜유, 팜핵유 그 파생 제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유기농 인증을 받았거나 지속가능해야 합니다. RSPO, SAN, RSB 또는 UEFT. RSPO 인증에 요구되는 최소 수준은 매스 밸런스(MB) 공급망 모델입니다. 따라서 '분리됨(S)'과 '특성 보존됨(IP)' 등급은 허용되나 '예약 및 클레임(B&C)' 등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단일 물질, 팜/팜핵유에서 파생된 다른 물질과 혼합된 물질 또는 물 및 식물 추출물과 같은 다른 물질과 혼합된 물질에 적용됩니다.

혼합물이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기 위해, CSPO(인증된 지속가능한 팜유) 인증서가 허용됩니다. 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이 필요합니다:

- 혼합물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지속가능한 성분만을 사용한다는 진술
- 인증된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지속가능한 인증서

7.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 인증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 COSMOS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 이상의 유기농 원료를 함유한다면 정해진 최소 유기농 함량은 없습니다.

7.6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 승인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원료의 COSMOS APPROVED를 신청하는 경우, 정해진 최소 유기농 함량은 없습니다.

8. 보관, 제조 및 포장

8.1 보관

보관구역은 제품의 순수성을 혼란시키거나 위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8.2 제조

유기농 또는 천연 원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다른 제조 공정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포함하는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원료 및 완제품의 완전한 이력 추적
- 모든 단계의 제조 절차
- 원료와 제품 시험
- 분석, 제조, 보관 기록

8.3 포장

완성된 화장품과 섬유 재질에 대한 1차 및 2차 포장은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벌크웨어와 브러시, 화장도구 또는 기술 부품 등 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부속품은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8.3.1 판매 단위(재고 유지 단위)는 모든 인증 화장품 제품에 대해 최소 2개의 서로 다른 원칙에서 최소 3개의 지표(아래 글머리 기호로 작성됨)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지표는 사용 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원칙 1: 감소

- 포장(1차 및 2차)과 제품 간의 적절한 부피 또는 중량 비율
- 2차 포장 없음
- 대량 판매 (벌크 제품)
- 샘플 등 일회용품 사용 금지

원칙 2: 재사용

- 리필/재사용 포장
- 반환 가능한 유리 및 기타 소재
- 사업자가 준비한 세컨라이프 패키징 (1차 포장, 2차 포장, 선적 자재 등)

원칙 3: 재생 가능성

- 재생 가능한 소재 (재생 가능한 소재는 세대를 거쳐 다시 보충될 수 있는 천연 자원에서 얻어지는 소재를 말합니다)
- 생분해성 및 퇴비화가 가능한 포장재
- 종이/카드에 대한 FSC/PEFC와 같은 환경 인증
- 라벨에 천연기반 잉크 및 접착제 사용 또는 실크스크린 인쇄

원칙 4: 재활용

- 1차 포장에 최소 20%의 재활용 소재 사용
- 1차 포장에 단일소재 사용 (용기와 뚜껑)
- 단일소재 펌프 사용
- 회사현지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분리할 수 있는 1차 및 2차 포장재(단일 소재가 아닌 경우)를 사용
- 회사 자체 또는 외부 제삼자에 의한 빈 포장 회수/예치금 구성
- 재활용 처리에 도움을 주는 재활용 소재 라벨 사용

8.3.2 포장은 적어도 3년마다 표준 8.3.1에 따라 개선되고 개선 가능성이 검토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검토를 진행한 회의록을 보관합니다.

또한, 가능한 개선의 근거로 판매 단위 수량(개수 또는 중량) 대비 사용된 포장재 수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8.3.3 부록 IX 는 허용되는 포장재료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들은 virgin 상태 및 /또는 또는 재활용 형태에서 허용됩니다.

8.3.4 다음 재질은 포장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AS)
-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아크릴레이트(ASA)
- 베이클라이트
- 에틸렌 기반 옥텐 플라스토머(OP)
- 소모성 폴리스티렌(EPS)
-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사용하여 제조된 물질이나 소재
- 동물의 일부 또는 동물 유래 물질(가죽, 실크 등)
- 페놀 포름알데히드(PF)
- 폴리(스티렌/부타디엔/메틸 메타크릴레이트)(MBS)
- 폴리카보네이트(PC)
-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PMMA)
- 폴리스티렌과 스티렌을 함유하는 기타 플라스틱
- 폴리염화비닐(PVC)과 기타 염화 플라스틱
- 우레아 포름알데히드(UF)

8.3.5 다른 소재로는 필요한 특성을 구현할 수 없는 경우 특정 기술적 목적으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펌프, 화장 도구(어플리케이터), 드롭퍼, 브러시 등). 기술 문서와 함께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3.6 다음 물질만 분사 가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기
- 아르곤
- 이산화탄소
- 질소
- 산소

8.4 섬유

일부 화장품은 구성 요소로 섬유(물티슈, 스트립, 마스크, 패드, 펠트 비누 등)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SMOS ORGANIC 제품의 경우, 화장품 제형은 본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섬유 물질은 100% 유기농 인증 물질이어야 합니다:
 - 섬유는 100% 유기농이어야 합니다
 - 색소를 첨가할 경우 COSMOS-standard 또는 GOTS를 충족해야 합니다

색소를 첨가할 경우 COSMOS-standard 또는 GOTS를 충족해야 합니다.

- COSMOS 천연 제품의 경우 섬유 구성 요소는 이 표준에서 명시한 물리 및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 표준을 충족해야 하며 유기농일 필요는 없습니다. 리오셀과 비스코스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섬유의 중량은 최종 제품의 유기농 및 천연 함량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표준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정은 섬유에도 적용됩니다 (부록 III 참조)

가열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모용 왁스 제품에 사용되는 섬유 및 부직포 소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COSMOS NATURAL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천연 또는 천연 유래의 섬유입니다
- 합성 섬유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섬유 소재에 사용된 결합제(바인더)는 기술적인 이유로 석유 화학 유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합제 중 최대 3%, 그리고 섬유 중 최대 1%까지 허용됩니다

펠트 비누에 사용되는 양모는 포장재가 아닌 식물 소재로 간주되므로 식물과 관련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소재가 필요한 경우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며, 기술 문서와 함께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환경 관리

9.1 환경 관리 계획

9.1.1 전 제조 공정과 모든 잔여물 및 폐기물을 고려하여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 계획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환경 관리 계획의 일환으로 기상, 액상, 고상 폐기물을 포함한 제조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 계획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표준으로 폐기물 저감, 재사용, 재활용을 목표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참고 - ISO 14000 또는 국가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 이 요구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9.1.2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판지, 유리, 종이 및 기타 폐기물을 분류하고
-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합니다
- 기타 모든 폐기물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냅니다

9.2 세척 및 위생

9.2.1 이 표준에 부합하는 세척제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식물 유래 알코올, 데실글루코사이드 등). 이 내용은 모든 단계의 공정에 해당됩니다. (예: 탱크, 도구)

9.2.2 다음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프로판올
- 아세트산(유래 무관)
- 양쪽성 계면활성제
- 포름산
- 글루타릭알데히드
- 과산화수소
- 이소프로필알코올
- 무기산과 무기알칼리
- 오존
- 과산화아세트산(및 안정제)

9.2.3 다음 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표준을 충족하는 식물성 계면활성제
 - 생분해성: 규정(EC) No. 648/2004 부칙 III(최종 생분해성)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 수생독성: EC50, IC50 또는 LC50 > 1 mg/l
-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표준에 따라 인증된 식물성 세정제(자세한 사항은 기술 가이드 참조)
- CSPO 인증을 받지 않은 팜 성분 및/또는 파생물(CSPO 사용을 권장하지만)

인증 기관은 특정 산업(제약, 식품)의 요구 사항에 따라 예외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2.4 고객은 세정제 잔류물이 없는지 검증하여야 합니다.

9.2.5 인증사업자는 제조 전후에 적합한 세척제와 소독제가 사용되도록 검사 시스템을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 계통에 검사 절차, 데이터 기록 및 작업원 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10.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

10.1 일반 규정

인증 표시 및 정보 전달은 명확해야 하고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여서는 안 됩니다.

참고 - 아래 수록된 요구 사항은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며 대부분의 국가 법제와 일치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추가적인 법률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구 사항은 인증 표시 가이드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완제품에 적용되는 표시 요구사항은 벌크웨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10.2 유기농 인증 제품

유기농 인증 제품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에 따라 COSMOS ORGANIC 서명과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라벨에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a) 완제품 중량 기준 기재 :
'완제품 기준 유기농 x%'
'유기농 x%'
'x% 인증 유기농'
또는
 - b) (6.2.1과 6.2.2에서 정의한 대로)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기준 또는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기준 유기농 y%'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인증된 유기농 y%'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완제품 기준 유기농 y%'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인증된 유기농 y%'
또는
 - a) 와 b) 모두 기재

하나의 제품에서 단일 원료로서 유기농 원료가 사용되고 복합추출물 내 비유기농 원료가 사용되었을 때, 해당 원료의 유기농 비율이 최소 95%이상 되어야 다음 문구를 라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PAI의 경우 '유기농 및 비유기농 원료/출처를 사용하여 제조됨'
- PPAI의 경우 '유기농 및 비유기농'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라벨에 완제품 중량 기준 천연 원료의 함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완제품 기준 천연 유래x%'
 - '천연 유래x%'
 - 'x% 인증 천연 유래'
- 다음 문구 선택지 중 하나로 전성분목록의 유기농 원료와 유기농 유래 원료로 제조된 원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으로,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라고 표시하거나 전성분목록에 사용된 문구 또는 비슷한 문구로 표시
 - 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유기농',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유기농 유래'로 표시

천연 유래 원료와 유기농 유래 원료의 함량은 최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라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수점 마지막 자리는 버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점 앞자리로 반올림해서는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유기농 삼푸'와 같이 제품의 명칭에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려면 완제품에 유기농 함량이 최소 95% 이상이어야 합니다

유기농 함량이 100%이거나 천연 함량이 100%인 제품의 경우 천연 함량을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 완제품 중량 기준 유기농 원료 함량을 '완제품 중 인증 원료 x%'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10.3 천연 인증 제품의 경우

천연 인증 제품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의 상세 설명에 따라 'COSMOS NATURAL' 로고와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표시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라벨에 완제품 중량 기준 천연유래원료의 함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완제품 기준 천연 유래x%'
 - '천연 유래x%'
 - 'x% 인증 천연 유래'

규제가 우려되는 경우,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 또는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천연유래원료 비율을 대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문구 선택지 중 하나로 전성분목록의 유기농 원료와 유기농 유래 원료로 제조된 원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으로,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라고 표시하거나 전성분목록에 사용된 문구 또는 비슷한 문구로 표시
 - 물리적으로 유기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유기농', 화학적으로 유기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유기농 유래'로 표시

하나의 제품에서 단일 원료로써 유기농 원료가 사용되고 복합추출물 내 비유기농 원료가 사용되었을 때, 해당 원료의 유기농 비율이 최소 95%이상 되어야 다음 문구를 라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CPAI의 경우 '유기농 및 비유기농 원료/출처를 사용하여 제조됨'
- PPAI의 경우 '유기농 및 비유기농'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

- 완제품 중량 기준 유기농 원료 함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완제품 기준 유기농 x%'
 - '유기농 x%'
 - 'x% 인증 유기농'
- (6.2.1과 6.2.2에서 정의한 대로)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또는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기준 유기농 원료의 함량을 다음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기준 유기농 y%'
 - '수분과 미네랄을 제외한 인증된 유기농 y%'
 -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완제품 중량 기준 유기농 y%'
 - '수분과 소금을 제외한 인증된 유기농 y%'

천연 유래 원료와 유기농 유래 원료의 함량은 최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라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소수점 마지막 자리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점 앞자리로 반올림해서는 안 됩니다.

포장 전면의 유기농 표시 사항은 전체 제품 대비 유기농 함량과 유기농 성분으로 제한되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포장 전면에서 가장 작은 글씨보다 더 두드러지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COSMOS NATURAL 로고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포장 전면에 위 첫 번째 항목에 부합하도록 표시합니다)
- 해당 유기농 원료는 전성분목록에서도 식별되어야 합니다. (위 단락 세 번째 항목에 따라)

100% 천연 제품의 경우, 천연 유래 함량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10.4 유기농 성분을 함유한 원료

유기농 인증을 받은 원료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COSMOS CERTIFIED 시그니처와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이 문서의 ‘정의’ 부분에서 원료의 정의 b)에 따라 정의된 원료의 경우 'COSMOS CERTIFIED' 로고를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표시에 인증 기관을 기재해야 합니다
- 라벨 및 관련 문서에 전체 중량 대비 유기농 함량을 '유기농 x%'로 표시해야 합니다

10.5 유기농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원료

유기농 함량이 없는 승인 받은 원료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인증 표시 가이드의 구체적인 설명에 따라 COSMOS APPROVED 로고와 COSMOS-standard AISBL 회원 기관의 인장을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라벨에 인증 기관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인증이나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인증 표시나 관련 문서에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10.6 홍보 문구

광고 또는 홍보 자료에 유기농, 천연 제품 성분 또는 원료를 언급할 경우 표현 문구는 10.2, 10.3, 10.4 및 10.5의 해당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10.7 회사명이나 제품군에 유기농을 사용하는 경우

회사명이나 제품군 명칭에 유기농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는 경우, 인증 제품과 함께 회사명이나 상표명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0.8 이 표준과 관련된 시그니처, 이름, 용어의 사용

COSMOS 용어와 COSMOS 시그니처는 COSMOS-standard AISBL의 등록 상표(®)이며 반드시 COSMOS-standard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COSMOS 시그니처, 이름, 용어는 문헌, 광고, 홍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COSMOS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경우 10.2, 10.3, 10.4 및 10.5 설명을 따라야 합니다
- 인증 제품 또는 인증 원료와 사용되어야 하며
- COSMOS 로고가 비인증 제품과 연관되어 보이는 것과 같이 소비자에게 혼동을 초래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특히 이러한 실수는 명확한 상황 설명 없이 비인증 제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문서에 이름(COSMOS)을 언급할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소비자에게 오해와 혼란을 줄 수 있는 유사 유기농 로고와 직인은 COSMOS 인증 제품 또는 승인 성분에 대해서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11. 인증 및 승인

11.1 인증

이 표준에 따라 유기농 또는 천연 제품(성분)으로 화장품 원료 또는 화장품에 대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 문서에 기술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인증 기관은 문서 확인과 현장 심사를 토대로 인증을 수행합니다. 인증은 원료 확인에서 완제품 유효성 검사까지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11.2 승인된 원료

이 문서의 정의 부분 '원료' 정의 중 a)에 따라 정의된 비유기농 화장품 원료의 승인은 현장 심사가 없는 문서 검증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원료' 파트 b)의 정의에 따른 비유기농 원료의 승인은 11.1에 설명된 조항을 따릅니다. 인증 기관의 승인은 인증과 다릅니다. 승인은 비유기농 원료가 이 표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승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증 기관의 요청에 따라 승인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원료 가공 변경 사항이 발생하여 승인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인증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승인된 화장품 원료가 이 표준에 따라 인증되었다고 표시하거나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시 조항과 추가적인 설명은 표시 가이드 10.5를 참조합니다.

11.3 인증 기관

이 표준에 따라 인증을 하는 기관은 COSMOS-standard AISBL의 (준)회원이어야 하며, 관리 표준서에 명시된 자격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인정과 인증 요구 사항: 전체 요구 사항으로 ISO 17065를 포함하여 COSMOS-standard 체계를 따라 인정되어야 함).

인증 기관은 이 표준과 관리 표준서(인정과 인증 요구 사항), 인증 표시 가이드에 따라 COSMOS-standard, COSMOS 시그니처, 이름,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에 COSMOS-standard AISBL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2. 표준 이행

12.1 효력 발생

이 표준(버전 4.2)는 2025년 9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집니다.

12.2 적용일

이 표준(버전4.2)는 2025년 9월 1일부로 적용합니다.

12.3 전환 조치

12.3.1 일반 규정

COSMOS 표준 4.0버전과 4.1버전에 적합하다고 확인된 모든 원료와 완제품은 자동적으로 본 표준에 적합합니다.

2025년 9월 1일 이후 인증 또는 승인을 신청한 화장품과 원료는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NOTE: 3.1버전에 따라 인증 받은 화장품은 2025년 12월 1일까지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화장품에 한해, 3.1버전 하에서 인증되거나 승인된 원료는 2025년 12월 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1일 이후 생산되는 모든 화장품은 본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2.3.2 특례

- § 6.1.3 - IUCN 적색 목록에 등재된 멸종위기종에 의해 수확 또는 채집되었으며,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와 주요 원료는 제출일과 관계없이 2025년 12월 1일 전까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록 II - 황산화 계면활성제 </5595>는 2029년 1월 1일까지 허용됩니다.

부록

부록 I: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34
부록 II: 농산물 가공에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	36
부록 III: 허용되지 않는 공정의 예.....	38
부록 IV: 사용 가능한 미네랄 유래 원료	39
부록 V: 기타 사용 가능한 원료.....	43
부록 V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46
부록 VI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51
부록 VIII: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 관련 예외 적용 대상 43.....	52
부록 IX: 포장재	53

부록 I: 허용되는 물리적 공정

다음 표준을 사용하여 공정을 선택합니다:

- 원료에 존재하는 천연 활성 물질을 보존하는 공정
- 우수 폐기물 관리 및 우수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는 공정

모든 추출물은 모든 형태의 물과 천연 물질과 함께 다음을 포함하는 식물성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되어야 합니다:

- 에틸알코올
- 글리세린
- 꿀
- 초임계 이산화탄소 흡수
- 식물성 기름

이 표준에 적합한 불활성 지지체에 흡수

탈색 - 탈취(이 표준에 부합하는 불활성 지지체 이용)

혼합

원심 분리

달임

탈색(허용 탈색제: 벤토나이트, 활성탄, 표백토, 과산화수소, 오존)

건조(증발이나 햇볕에 의한 자연 또는 점진 건조)

탈테르펜(증기를 이용한 분별 증류)

증류, 압착, 추출(증기)

추출

여과, 정제(초여과, 투석, 결정화, 이온교환)

냉동

분쇄

우려냄

동결 건조

침연

전자레인지

삼출

압력

로스팅

침하, 상층액 분리

체로 거르기

압착, 분쇄

UV 멸균

열처리 멸균(온도는 활성 성분에 따라 다름)

초음파

UV 처리

진공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무기산 수용액(염산, 황산, 인산, 등)은 중화, 정화, 추출을 위한 제조 보조제로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응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원료 또는 성분)
- 따라서 제조 보조제는 원료나 완제품의 INCI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1차 비유기농 식물 원료의 보존 또는 처리는 최종 원료에 남아 있지 않는 한 확인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의 경우, 보조제는 본 표준의 원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록 II: 농산물 가공에 허용되는 화학적 공정

다음 표준을 사용하여 공정을 선택합니다:

- 생분해성 분자가 형성되는 공정
- 원료에 존재하는 천연 활성 물질을 보존하는 공정
- 우수 폐기물 관리 및 우수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생태학적 균형을 고려하는 공정

알킬화

아마이드 형성

생명공학공정

식물 잔류물의 회화

탄화(레진, 지방유)

응축, 부가

에스테르화, 에스테르결합전이반응, 에스테르교환

에틸화

수화

수소화

가수 분해

이온교환

중화

산화/환원

인산화(잔류형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만 허용)

비누화

황산화/설폰화(염소 처리한 황산화 시약을 사용하지 않고 탄소 또는 산소 원자에 대해) - 씻어내는 제품의 계면활성제에만 허용됨

석유 화학 용매 사용

COSMOS-standard는 화학적으로 가공하는 농산물 원료의 가공에 천연 유래 용매의 사용을 촉진합니다. 현재 개발 실정을 고려하여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 화학 용매는 효과적인 천연 대체 용매가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재활용 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질소 또는 황(DMSO 제외) 기반 용매는 화학적으로 처리된 농산물 원료의 용매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처리용 용매가 완전히 제거되더라도 포름알데히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차 비유기농 식물 원료의 보존 또는 처리는 최종 원료에 남아 있지 않는 한 확인하지 않습니다

화학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 원료:

- 석유 화학 용매나 석유 화학 보조제(촉매, 소포제 등)는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보조제는 이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할로겐화 공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활성화 단계에서도 사용 불가)

제조 공정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무기산 수용액(염산, 황산, 인산, 등)은 중화, 정화, 추출을 위한 제조 보조제로서 허용됩니다. 그러나 반응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원료 또는 성분)
- 따라서 제조 보조제는 원료나 완제품의 INCI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황산화/설폰화 반응에 대해 허용되는 황산, 인산화 성분을 제조하기 위해 허용되는 인산제는 잔류형 제품에만 허용됩니다
- 차아염소산나트륨 은 물리적으로 가공된 비유기농 농산물 원료에 존재하는 효소를 불활성화하는 보조제로 사용될 수 있다

인산화 화합물의 사용 조건:

- 잔류형 제품 및 사용 후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만 허용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인산염을 함유하는 성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조 단계에서 할로겐화된 인 반응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유기 인산염 분자에서 인산염 함량이 5% 이하인 경우
 - 제조 시설이 자체 하수 처리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부록 III: 허용되지 않는 공정의 예

부록 I과 부록 II에 수록된 공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허용되지 않는 일부 주요 공정을 예시하였습니다.

탈색 - 탈취(동물 유래 지지체)

소듐하이포클로라이트로 표백

탈페르펜(증기 외 다른 물질 사용)

전기 또는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모든 과정(봉독 및 달팽이 점액 등)

할로겐화(주반응)

이온화 방사선(예시: 알파, 베타, 감마, 엑스레이)

수은을 사용하는 처리

에틸렌옥사이드,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기타 알킬렌옥사이드의 사용(예: 에톡실화 및 프로폭실화의 일부로써)

부록 IV: 사용 가능한 미네랄 유래 원료

미네랄 유래 원료*는 아래에 수록되고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원료는 다음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용 한도 내에서
- 사용 제한이 없는 경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유래 인산염 성분은 아래 수록된 원료 외에도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완충, 킬레이트, 고결 방지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수록된 '미네랄 유래 원료'의 모노-, 디-, 트리-, 폴리- 형태의 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순수 금속이나 전기 분해로 직접 얻은 자연 상태 금속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네랄 관련 표준은 6.1.2를 참조합니다

INCI명 (화학 물질명)	CAS 번호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Aluminum Hydroxide	21645-51-2		보크사이트(깁사이트, 하이드라질라이트)
Aluminum Iron Silicates	-		세라믹(규산염 광물을 가열하여 얻은)
Alumina	1344-28-1		커런덤, 점토
Ammonium Sulfate	7783-20-2		
Calcium Aluminum Borosilicate	65997-17-3		토르말린
Calcium Carbonate, CI 77220	471-34-1		퇴적암, 석회암, 아라고나이트, 바테라이트 대리석, 분필, 백운석의 주성분
Calcium Chloride	10043-52-4		
Calcium Fluoride	7789-75-5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형석, 단순 할로겐 광물의 광물 계열에서 흔한 미네랄
Calcium Hydroxide	1305-62-0		
Calcium Sodium Borosilicate	-		
Calcium Sulfate	7778-18-9		석고
Cerium Oxide	1306-38-3		세릿
CI 77163 (Bismuth Oxychloride)	7787-59-9		비스모클라이트
CI 77289 (Chromic Oxide hydrated)	1308-14-1 / 12001-99-9		구이나이트, 그리말디트, 브라세웰리트, 에스콜라이트

INCI명 (화학 물질명)	CAS 번호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CI 77489 (Iron Oxides)	1345-25-1		베르날리트, 페록시지트 페리하이드라이트, 침철석 레피도크로사이트
CI 77491 (Iron Oxides)	1309-37-1 / 1317-61-9 / 1345-27-3 / 52357-70-7 / 1345-25-1		
CI 77492 (Iron Oxides)	51274-00-1 / 1345-27-3 / 20344-49-4 / 52357-70-7		
CI 77499 (Iron Oxides)	12227-89-3 / 1309-37-1 / 1317-61-9 / 1345-25-1 / 1345-27-3 / 52357-70-7		
CI 77510 (Prussian Blue)	12240-15-2 / 25869-00-5		카페하이드로시아나이트
CI 77742 (Manganese Violet)	10101-66-3		박쥐 구아노 분해물
CI 77745 (Trimanganese Bis(orthophosphate))	10124-54-6 / 14154-09-7		
Diatomaceous Earth	61790-53-2		
Dicalcium Phosphate Dihydrate	7757-93-9 / 7789-77-7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Glass	65997-17-3		
Gold	7440-57-5		
Hydrated Silica	10279-57-9 / 1343-98-2 / 7631-86-9 / 112926-00-8 / 63231-67-4		규사
Hydroxyapatite	1306-06-5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또는 리브온 제품에만	치아 에나멜 성분
Iron Hydroxide	20344-49-4		
Magnesium Aluminum Silicate	1327-43-1		
CI 77713 (Magnesium Carbonate)	546-93-0 / 7757-69-9		마그네사이트, 백운석
Magnesium Carbonate Hydroxide	12125-28-9		아르티나이트, 히드로마그네사이트, 디핀자이트(Dypingite)

INCI명 (화학 물질명)	CAS 번호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Magnesium Chloride	7786-30-3 / 14989-29-8		
Magnesium Hydroxide	1309-42-8		
Magnesium Oxide	1309-48-4		
Magnesium Phosphate	10043-83-1	산화아연과 사용하는 경우에만	
Magnesium Silicate	1343-88-0		사문석 계열 활석, 해포석, 미네랄
Magnesium Sulfate	7487-88-9 / 18939-43-0		키제르석
Manganese Sulfate	7785-87-7 / 10124-55-7		
Mica	12001-26-2		안나이트, 금운모 백운모
Potassium Alum	10043-67-1 / 7784-24-9		
Potassium Carbonate	584-08-7		내수, 재(ash) 형태 (사해, 로노누로 사막)
Potassium Chloride	7447-40-7		칼리 암염, 광로석, 카이니트석
Potassium Hydroxide	1310-58-3		
Potassium Iodide	7681-11-0		
Potassium Sulfate	7778-80-5		
Silica	7631-86-9 / 112945-52-5 / 60676-86-0		규사
Silver	7440-22-4		
Silver Oxide	20667-12-3		은광석. 황화물, 황산염, 산화물로 납-구리, 아연 광석과 주로 함께 존재
Silver Sulfate	10294-26-5		은광석. 황화물, 황산염, 산화물로 납-구리, 아연 광석과 주로 함께 존재
Sodium Bicarbonate	144-55-8		천연탄산소다, 미네랄 중탄산나트륨
Sodium Carbonate	497-19-8		소산호에 존재하는 천연 탄산(다양한 결정형)
Sodium Chloride	7647-14-5		
Sodium Fluoride	7681-49-4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해수, 샘물
Sodium Hydroxide	1310-73-2		
Sodium Magnesium Silicate	101659-01-2		

INCI명 (화학 물질명)	CAS 번호	사용 제한	자연 발생 예
Sodium Metasilicate	6834-92-0		
Sodium Monofluorophosphate	10163-15-2 / 7631-97-2	구강 위생 제품에만 해당	
Sodium Silicate	1344-09-8		
Sodium Sulfate	7727-73-3 / 7757-82-6		글라우버염, 광전수, 데나르드석
Sodium Thiosulfate	7772-98-7 / 10102-17-7	비누에만 사용	
Titanium Dioxide, CI 77891	13463-67-7 / 1317-70-0 / 1317-80-2	기술 가이드의 5.1.1 참조 자외선 차단제 및 색조 화장품에 한함	예추석, 판티탄석, 금홍석
Tin Oxide	18282-10-5		층적토 주석석
Ultramarines, CI 77007	1302-83-6 / 1317-97-1 / 1345-00-2 / 11118-33-5 / 12703-66-1 / 12769-96-9 / 57455-37-5		보석의 원석(청금석)
Zinc Oxide, CI 77947	1314-13-2	기술 가이드의 5.1.1 참조	울핀지트, 스위트이트, 아스호베라이트
Zinc Sulfate	7733-02-0 / 7446-19-7 / 7446-20-0		고슬러라이트

부록 V: 기타 사용 가능한 원료

나열된 성분만 COSMOS NATURAL 및 COSMOS ORGANIC 인증 제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열된 것 이외의 석유 화학 물질이 포함된 다른 성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부록은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표준 개정에서 적절한 대체 물질이 확인된 물질은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다음 성분은 유기농으로 인증될 수 없습니다.

1. 석유 화학유래(비천연물질 - NNI) 유래 보존제 및 변성제

성분	사용 제한
벤조산과 그 염	
벤질알코올	
탈수소 아세트산과 그 염	
데나토늄벤조에이트, 삼차부틸알코올 및 기타 알코올 변성제(프탈레이트류 제외)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에탄올 변성제로 사용되는 경우만
살리실산과 그 염	
소르브산과 그 염	

이 NNI 함량은 완제품 석유 화학 부분 함량 제한(2%)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2. 다음 농산물은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해 추출할 수 있습니다.

성분	사용 제한
애플루트, 콘트리트, 레지노이드	COSMOS NATURAL만
안나토	
베타인	
카로티노이드/잔토피	
카라기난	
글라이코스핑고리피드 및 글라이코리피드	
라놀린	
레시틴 및 그 유도체	
오리자놀	
피토스테롤	
토코페롤, 토코트리에놀	

어떠한 경우에도 방향족, 알콕실레이트화, 할로겐화, 질소 또는 황 기반의 용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용매는 완제품에서 완전하게 제거되거나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효용이 없는 농도로 제거하거나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3. 천연 유래와 석유 화학 부분(PeMo)를 모두 포함하는 원료

계열	사용 가능한 INCI 참고- 이 열에 수록된 물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열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의 경우 동일 계열 모든 물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제한
알킬아미도프로필베타인	Cocoamidopropylbetaine / Olive amidopropyl betaine/ Cocobetaine	
알킬암포아세테이트/디아세테이트		
알킬디모늄하이드록시프로필 가수 분해 식물성 단백질	Cocodimonium Hydroxypropyl Hydrolyzed Wheat Protein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알킬글루코사이드카르복실레이트		
알킬메틸글루카마이드		
카르복시메틸 - 식물성 고분자	Carboxy Methyl Cellulose (Cellulose Gum)	
디알킬 카보네이트	Dicaprylyl Carbonate	
디알킬디모늄클로라이드	Distearoylethyl Dimonium Chloride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테트라소듐글루타메이트디아세테이트	Tetra Sodium Glutamate Diacetate	비누화 반응을 통해 얻은 제품/성분(액체 또는 고체)의 킬레이트제 기능만을 위한 것
식물성 고분자 - 하이드록시프로필트리모늄클로라이드	Guar Hydroxypropyl Trimonium Chloride	두발/수염 제품에만 사용

이 성분표는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잠정 허용 대상을 적합한 대체 물질이 존재하는 경우 허용 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거나 생태학적 특성이 더 바람직한 물질로 대체합니다.

석유 화학 부분의 전체는 전체 제품에서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석유 화학 부분이 포함된 원료에서 석유 화학 부분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석유 화학 부분(%) = 석유 화학 유래 부분 분자 중량 / 전체 분자량 × 100

천연 유래와 석유 화학 부분(PeMo)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원료는 유기농이 될 수 없습니다.

4. 기타 원료

성분	사용 제한
카라멜	시약 및 공정이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카민	
CI 77288 (삼산화이크로뮴, 산화크롬, 산화크롬(III))	
진주층/굴껍질 분말	자연 폐사 조개, 식품 폐기물이 아닌 야생 채취
실크	
스쿠알란	식물 유래

부록 V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다음 물리적으로 가공된 농산물은 유기농 형태로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COSMOS ORGANIC 인증 제품은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야생 식물은 허용됩니다. 참고- 자세한 사항은 기술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다음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향수 및 향수 성분과 같이 복잡한 혼합물의 성분
- 석유 화학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는 원료(부록 V.2)

이 목록은 시판되는 물리적으로 가공된 유기농 농산물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검토 및 업데이트됩니다.

일반명	INCI명
알로에	Aloe Barbadensis Extract Aloe Barbadensis Leaf Extract Aloe Barbadensis Leaf Juice Aloe Barbadensis Leaf Juice Powder Aloe Barbadensis Leaf Powder Aloe Barbadensis Leaf Water
아몬드	Prunus Amygdalus Dulcis Oil
살구	Prunus Armeniaca Kernel Oil (only for plant oil)
아르간	Argania Spinosa Kernel Oil
아르니카	Arnica Montana Extract Arnica Montana Flower Extract Arnica Montana Flower Oil Arnica Montana Flower Water
캐모마일 캐모마일	Chamomilla Recutita Extract Chamomilla Recutita Flower Water Chamomilla Recutita Flower Extract Chamomilla Recutita Leaf Extract Chamomilla Recutita Flower Oil Chamomilla Recutita Oil Chamomilla Recutita Flower/ Leaf/ Stem Extract Chamomilla Recutita Flower/ Leaf/ Stem Water Anthemis Nobilis Flower Extract Anthemis Nobilis Flower Oil Anthemis Nobilis Flower Water
피마자	Ricinus Communis Seed Oil
시나몬	Cinnamomum Zeylanicum Bark Extract Cinnamomum Zeylanicum Leaf Oil Cinnamomum Zeylanicum Bark Oil Cinnamomum Zeylanicum Bark Powder Cinnamomum Zeylanicum Leaf Extract

일반명	INCI명
시트로넬라	Cymbopogon Winterianus Herb Extract Cymbopogon Winterianus Herb Oil Cymbopogon Nardus Herb Extract Cymbopogon Nardus Herb Oil
코코아버터	Theobroma Cacao Seed Butter
코코야자	Cocos Nucifera Oil
우유	Lac
사이프러스	Cupressus Sempervirens Bark Extract Cupressus Sempervirens Cone Extract Cupressus Sempervirens Fruit Extract Cupressus Sempervirens Leaf Extract Cupressus Sempervirens Leaf Water Cupressus Sempervirens Oil Cupressus Sempervirens Seed Extract
계란 = 무수정 계란 및 그 파생물	Egg Egg oil Egg powder Egg shell membrane Egg shell membrane extract Egg shell membrane powder Egg shell powder Egg yolk powder
유칼립투스	Eucalyptus Oil Eucalyptus Globulus Leaf Eucalyptus Globulus Leaf Extract Eucalyptus Globulus Leaf Oil Eucalyptus Globulus Leaf Powder Eucalyptus Globulus Leaf Water Eucalyptus Citriodora Leaf Extract Eucalyptus Citriodora Oil Eucalyptus Radiata Leaf Extract Eucalyptus Radiata Flower Extract Eucalyptus Radiata Stem Extract
회향	Foeniculum Vulgare Fruit Extract Foeniculum Vulgare Fruit Oil Foeniculum Vulgare Leaf Extract Foeniculum Vulgare Water Foeniculum Vulgare Oil
제라늄	Pelargonium Graveolens Leaf/ Flower Oil Pelargonium Graveolens Flower/ Leaf/ Stem Water
포도씨	Vitis Vinifera Fruit Extract Vitis Vinifera Fruit Water Vitis Vinifera Leaf Extract Vitis Vinifera Leaf Water Vitis Vinifera Seed Oil/ Extract
삼	Cannabis Sativa Seed Oil

일반명	INCI명
꿀	Mel
서양고추나물	Hypericum Perforatum Extract Hypericum Perforatum Oil Hypericum Perforatum Flower/ Leaf Extract
호호바	Simmondsia Chinensis Seed Oil
레몬	Citrus Limon Extract Citrus Limon Fruit Extract Citrus Limon Leaf Extract Citrus Limon Juice Citrus Limon Peel Extract Citrus Limon Oil Citrus Limon Flower Oil Citrus Limon Peel Oil Citrus Limon Leaf Oil
레몬그라스	Cymbopogon Flexuosus Oil
고산	Linum Usitatissimum Seed Extract Linum Usitatissimum Seed Oil
마카다미아	Macadamia Integrifolia Seed Oil
메리골드	Calendula Officinalis Flower Oil
레몬밤	Melissa Officinalis Flower Extract Melissa Officinalis Leaf Extract Melissa Officinalis Leaf Oil Melissa Officinalis Leaf Water
민트	Mentha Arvensis Flower/ Leaf/ Stem Extract Mentha Arvensis Leaf/ Stem Water Mentha Piperita Flower/ Leaf Oil Mentha Piperita Flower/ Leaf/ Stem Extract Mentha Piperita Flower/ Leaf/ Stem Oil Mentha Piperita Flower/ Leaf/ Stem Water Mentha Spicata Flower/ Leaf/ Stem Extract Mentha Spicata Flower/ Leaf/ Stem Oil
인도멸구슬나무	Melia Azadirachta Bark/ Flower/ Leaf/ Seed Extract Melia Azadirachta Seed Oil
쑥기풀	Urtica Dioica Leaf/ Root Extract
올리브	Olea Europaea Fruit Oil Olea Europaea Flower Extract Olea Europaea Flower Water Olea Europaea Fruit Extract Olea Europaea Fruit Water Olea Europaea Leaf Extract Olea Europaea Leaf Oil Olea Europaea Leaf Water

일반명	INCI명
오렌지	Citrus Aurantium Flower Extract Citrus Aurantium Flower Oil Citrus Aurantium Leaf Extract Citrus Aurantium Leaf Oil Citrus Aurantium Peel Extract Citrus Aurantium Peel Oil Citrus Aurantium Dulcis Flower Extract Citrus Aurantium Dulcis Flower Oil Citrus Aurantium Dulcis Flower Water Citrus Aurantium Dulcis Fruit Extract Citrus Aurantium Dulcis Peel Extract Citrus Aurantium Dulcis Peel Oil Citrus Aurantium Amara Flower Extract Citrus Aurantium Amara Flower Oil Citrus Aurantium Amara Flower Water Citrus Aurantium Amara Fruit Extract Citrus Aurantium Amara Fruit Juice Citrus Aurantium Amara Peel Extract Citrus Aurantium Amara Peel Oil
야자	Elaeis Guineensis Oil
파출리	Pogostemon Cablin Leaf Oil
페퍼민트	Mentha Piperita Water Mentha Piperita Extract Mentha Piperita Leaf Water Mentha Piperita Leaf Extract Mentha Piperita Flower/ Leaf/ Stem Extract Mentha Piperita Flower/ Leaf/ Stem Water Mentha Piperita Oil
유채	Brassica Campestris Seed Oil
로즈마리	Rosmarinus Officinalis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Flower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Leaf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Flower/ Leaf/ Stem Extract Rosmarinus Officinalis Water Rosmarinus Officinalis Flower/ Leaf/ Stem Water Rosmarinus Officinalis Leaf Oil Rosmarinus Officinalis Flower Oil Rosmarinus Officinalis Stem Oil
잇꽃	Carthamus Tinctorius Seed Oil
살비아	Salvia Officinalis Oil Salvia Officinalis Flower/ Leaf/ Stem Extract Salvia Officinalis Flower/ Leaf/ Stem Water Salvia Sclarea Flower/ Leaf/ Stem Extract Salvia Sclarea Flower/ Leaf/ Stem Water Salvia Sclarea Oil
참깨	Sesamum Indicum Seed Oil
시어버터	Butyrospermum Parkii Butter Butyrospermum Parkii Butter Extract

일반명	INCI명
콩	Glycine Soya Oil
해바라기	Helianthus Annus Seed Oil
티트리	Melaleuca Alternifolia Leaf Oil Melaleuca Alternifolia Leaf Water Melaleuca Alternifolia Leaf Extract
백리향	Thymus Vulgaris Flower/ Leaf Extract Thymus Vulgaris Flower/ Leaf Oil Thymus Vulgaris Leaf Water Thymus Vulgaris Oil
버지니아풍년화	Hamamelis Virginiana Bark/ Leaf Extract Hamamelis Virginiana Bark/ Leaf Water Hamamelis Virginiana Flower Water
일랑일랑	Cananga Odorata Flower Extract Cananga Odorata Flower Water Cananga Odorata Flower Oil Cananga Odorata Leaf Oil

부록 VI에 수록된 유기농 원료가 부족한 경우, 인증 기관은 관리 표준서 및 기술 가이드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예외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록 VII: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해야 하는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다음의 화학적으로 가공된 농산물 원료는 유기농의 형태로 충분한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간주되므로, COSMOS ORGANIC 인증 제품에서 반드시 유기농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본 목록은 시장에서 화학적으로 가공한 유기농 농산물의 가용성에 기초하여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INCI	화학명
Ethanol, ethyl alcohol, alcohol	에틸알코올

부록 VII에 수록된 유기농 원료가 부족한 경우, 인증 기관은 관리 표준서 및 기술 가이드에 규정된 규정에 따라 예외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부록 VIII: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 관련 예외 적용 대상 43

파트 1: 수생독성 및 생분해성에 대한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발효에서 생성되는 자연 발생 분자(예: 히알루론산)
- 자연에 존재하는 분자가 분해되어 생성된 분자(예: 전분 가수 분해로 생성된 말토덱스트린 등) 예외가 적용되는 분해반응은 효소 가수 분해와 무기산 또는 무기염 가수 분해 반응입니다
- 단량체의 에스터화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6.1.4에 정의된 비지속성 제품 특성을 충족하는 중합체(고분자)
- 경화유나 경화버터
- 향수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분자의 염(용매/물리적 추출 및 염화에 의해 얻은 염) 그러나 아연염에 관한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산과 알코올의 에스터화 반응에 의해 생성되며 6.1.4에 정의된 비지속성 제품 특성을 충족하는 난용성 에스터(폴리에스터 포함)

파트 2: 원자 경제에 대한 예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독성 및 생분해성 데이터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 발효에서 생성되는 자연 발생 분자(예: 히알루론산)
- 향수

다른 원료의 경우, 시험이 수행되지 않았다면 서면(참고 문헌) 자료를 제출하거나 교차 비교 또는 QSAR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 가이드를 참고합니다.

부록 IX: 포장재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일부 물질):

- CA - 아세트산 셀룰로오스
- 셀룰로오스
- 세라믹
- 유리
- 알루미늄, 철, 스테인리스강 등의 금속
- 종이/판지
- PE- 폴리에틸렌
- PET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 PETG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글라이콜
- PLA- 폴리락틱애씨드
- PP- 폴리프로필렌
- 고무(천연)
- 나무
- 기타 100% 천연 유래 소재(비 GMO)

사용 가능한 물질 목록은 다음과 같은 1차 포장 요소에 적용됩니다:

- 용기
- 상자
- 뚜껑
- 크림 용기
- 주머니(사워)
- 튜브

이 부분은 위에 수록된 사용 가능한 물질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이 표준은 피부, 건강 및 색조 화장품 등 모든 유형의 제품에 적용됩니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기술 위원회에 기술 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용 슬리브 사용과 과대 포장

다음은 제외하고 보호용 슬리브 사용이나 과대 포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밀폐 계통
- 소형 제품(장식용 화장품 등)
- 고체 비누 및 마사지 바(1차 포장으로 간주되는 경우)



COSMOS-standard AISBL

**Rue Marie Thérèse 11, 3rd floor
1000 Brussels, Belgium**

info@cosmos-standard.org